

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

제1조(목적)

이 특별약관(이하 "특별약관"은 "특약"이라 합니다)은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이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대리하여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 - 가. 보통약관: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.
 - 나. 특약: 보통약관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.
 - 다. 보험계약자: 보험회사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와 보험계약(이하 "계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, 이하 "계약자"라 합니다.
 - 라. 보험수익자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마. 피보험자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2.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
 - 가. 기명 대리청구인: 보험수익자가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.
 - 나. 무기명 대리청구인: 보험수익자가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.

제3조(보험금의 청구)

- ①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에서 지정된 대리청구인(이하, "대리청구인"이라 합니다)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 1. 청구서(회사양식)
 2. 사고증명서
 3. 대리청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하며, 이하 "신분증"이라 합니다)
 4.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주민등록등본
 5.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-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제4조(보험금의 지급절차)

- ①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에서 지정된 대리청구인은 제3조(보험금의 청구)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5조(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) 제2항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인의 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, 대표 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 다만, 2인 이상의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제5조(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)

-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 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부가되어집니다.
- ② 이 특약의 적용대상은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약으로 합니다.

제6조(특약의 소멸)

제5조(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)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이 해지(解止)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

- 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2항에서 정한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청구인(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,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 지정)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.
 -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무기명으로 제3조(보험금의 청구) 제1항 제4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예 시	대리청구인 지정 예시
· 기명 대리청구인	
-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: (예시) <u>“김00”</u>	
· 무기명 대리청구인	
-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정 : (예시) <u>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</u>	

예 시	무기명 대리청구인 판단 예시
·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<u>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</u> (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)로 지정한 후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인 경우 → 해당 시점 대리청구인은 제3조(보험금의 청구) 제1항 제4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	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제8조(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)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제3조(보험금의 청구)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-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 -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. 단,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.
-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(회사양식)
 - 계약자의 신분증
 -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(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)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제8조(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)

-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.
-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(회사양식)
 - 계약자의 신분증
 -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 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7조(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제9조(준용규정)

이 특약은 보통약관의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